

ESG위원회 운영규정



주식회사 풀무원

제1조 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인 Environmental,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- ② 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비재무 리스크를 관리한다.

제2조 (역할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,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을 발굴,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·검토한다.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'위원장'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유고시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.
 - 1. 사외이사 중 가장 먼저 위원회에 선임된 이사
 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

제5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 회 개최한다.
-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 (소집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4조 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그러나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 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 의 위임에 따라 아래 사항을 결의한다.
 1.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
 2.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목표
 3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1. 지속가능경영 이행 성과
 2. 지속가능경영 관련 리스크 및 대응에 관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속가능경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 1. 환경(생물다양성, 기후변화 대응 등)
 2. 인권 및 다양성
 3. 안전보건
 4. 공급망 ESG
 5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
 6. 인적자원관리

7. 사회공헌

8.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주주권리 보호

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(관계인의 출석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이사회, 대표이사와의 관계)

①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의견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에 관한 결의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위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위원회 지원조직)

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지속가능경영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사회 사무국은 간사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 사무 전반을 지원한다.

제13조 (규정의 개정 등)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1)

이 규정은 2017 년 10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이 규정은 2022 년 10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이 규정은 2024 년 07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.